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고 용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0년에 한하여 60일을 연장하여 사업주와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21조제2항)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2020년에 한하여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하여 24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240일에 이를 때까지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한 사업주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생략)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u>.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240일에 이를 때까지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u>
③·④ 삭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73